

산학협력단 운영 규정

제정 2003. 10. 1. 전면개정 2013. 3. 1.

개정 2013. 7. 1. 개정 2016. 3. 1.

개정 2016. 12. 2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(이하 “산학협력단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. <개정 2016.3.1.>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산학연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지원·조정 <개정 2016.3.1.>
2. 산학연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 <개정 2016.3.1.>
3. 교외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지급·관리
4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단장) 단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겸임하게 하거나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동등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제5조(연구원 및 직원)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은 산학협력단의 사무뿐 아니라 본 대학의 교육·연구 등도 담당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② 하부조직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7조(업무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<개정 2016.3.1.>
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<개정 2016.3.1.>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산학일체형 CO-OP 교육과정 개발·운영 <개정 2016.3.1.>
7. 정부·단체 및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발굴과 과제수행 <개정 2016.3.1.>
8. 대학시설 및 기타 자원의 산업화·수익화 사업 <개정 2016.3.1.>
9. 대학의 교지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<개정 2016.3.1.>
10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<개정 2016.3.1.>
11. <삭제 2016.3.1.>
12. <삭제 2016.3.1.>
13. <삭제 2016.3.1.>
14. <삭제 2016.3.1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3.>

③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 <신설 2013.7.1., 개정 2016.3.1., 2016.12.23.>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사업의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
5.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, 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동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12.23.>
6.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<개정 2016.12.23.>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11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운영위원회 회의록) ① <삭제 2013.7.1.>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13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삭제 <2016.12.23.>

제 5 장 회 계

제20조 삭제 <2016.3.1.>

제21조 삭제 <2016.3.1.>

제22조 삭제 <2016.3.1.>

제23조(회계년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 <개정 2016.3.1.>

제24조(회계관리)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① <삭제 2016.3.1.>

② <삭제 2016.3.1.>

③ <삭제 2016.3.1.>

④ <삭제 2016.3.1.>

제25조 삭제 <2016.3.1.>

제26조 삭제 <2016.3.1.>

제27조 삭제 <2016.3.1.>

제28조 삭제 <2016.3.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